

학생자치회 운영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1. 학생(급)자치회 선거관련 안내

■ 중요 안내사항 정리

- 선거의 모든 관리는 학생들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함
- 학교생활인권규정에 학생자치활동 조직 및 운영의 관한 사항 기재와 개정 (초중등 교육법 제8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 18조)
- 학생자치회 규정과 학급자치회 규정을 반드시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제정함
- 반드시 선거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규정에 따라 선거가 운영되게 함
- 기존 반장제도는 학급자치회장 제도로 일원화
 - 교사를 대신하여 학생들을 지도한다는 의미가 내포된 반장제도를 없애고 학생들의 의견을 모으고 대표한다는 역할 강조
- 매니페스토(manifesto)를 실천하는 학생자치회 운영
- 학생자치회장(부회장)과 학급자치회장(부회장)은 학교장 임명장이 아닌 학생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당선증 발급
- 전자투표시스템 사용 지양
- 교육적 지도 명목으로 교사나 학교의 지나친 선거 개입을 금지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선거 중립성, 행정상의 절차 등에 대해 교육 지원
- 선거공약에 대해 학교가 일방적으로 불가하다고 판정하거나 학교장이나 교무회의 등에서 일방적으로 선거무효를 결정해서는 안됨
- 성적 등의 이유로 입후보자의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됨
 - ※ 징계에 의한 자격제한은 시효를 두되(선도처분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 지나치게 과거의 징계로 인하여 후보출마를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모든 판단을 유권자에게 맡기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들이 제안한 안건 심의 시 학생 참여 및 의견 청취
-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위원회, 교복공동구매 추진 위원회 등 학생관련 주요 정책 결정에 학생대표 참여 의무화
- 학생자치회 회의결과 반영을 위한 통로 마련(업무부장, 교장선생님과 정기적 만남 등)
-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내 학급회의 시간 확보(월 1회이상 권장)
- 학생(급)자치회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은 창의적체험활동의 자율활동에 기록함 (임명장이 당선증으로 변경되어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이 기존에서 변경되는 사항은 없음)
- 임명장이 당선증으로 변경되어도 고등학교 신입생 내신성적 반영시 자치회 임원활동 가산점 동일하게 적용

■ 당선증 발급 범위 및 방법

- 학생들에 의한 선출직인 학생자치회장, 학생자치회부회장, 학급자치회장, 학급자치회부회장은 당선증 발급
- 학생자치회장, 부회장은 학생선거관리위원회의 관인으로, 학급자치회장, 부회장은 학급선거관리위원회 관인으로 해야 하나, 학급선거관리위원회 관인을 모두 제작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학교의 모든 선거관리는 학생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되, 학급선거는 학생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학급선거관리위원회로 위임하는 형식을 취하고, 당선증은 학생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줄 것을 권장함(학급선거관리위원의 명의의 당선증 발급도 가능함)
- 학교생활인권규정에 학교장이 임명장을 수여하는 학교는 규정을 개정하여 학생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증을 주도록 함
- 각 부서 임원들로 구성된 학생자치회 운영위원은 당선된 학생회장이 추천이나 공모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생자치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촉하는 형태로 위촉장을 주는 것을 권장함

■ 매니페스토(manifesto)를 실천하는 학생자치회 운영

- 매니페스토란 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에 대한 계약으로써의 목표와 이행 가능성, 예산 확보의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공약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 학생(급)자치회후보자 정책 토론회 실시: 후보자가 소견문을 발표하고 다른 후보자들과의 질문과 반론, 청중의 질문에 대한 답변 등
- 토론회로 공약 이행 검토 실시 : 학생(급)자치회장 제시한 공약이 어떻게 이행되었고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피드백 실시 등
- 신뢰성을 지닌 후보자가 당선되고 공약 실천에 대해 책임감 가지는 문화 조성

■ 선거관리위원회 청인 사용 관련

- 선거관리위원회 청인의 크기(3.6cm 정방형)
- 글자체: 전서체
- 청인내용: ○○고(중, 초)등학교학생자치회선거관리위원회인(예시)
 - ※ 끝에 '인'자 반드시 포함
- 신청 방법(관련규정: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 공인 신청 후 학교 공인대장에 기록 후 사용-※ 교육지원청 관보게재는 하지 않음

▣ 선거관련 주요 민원

- 전자투·개표 시스템 사용에 따른 신뢰성 결여(가장 많은 민원)

- 전자투표가 가져올 수 있는 오류와 신뢰성을 줄이고, 학교가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실천하는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실제로 선거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수기방식의 투표로 운영되어야 함(민원 제기 이유)
- 근소한 표차이로 낙선한 후보가 재검표를 요구할 경우 재검 불가의 경우가 많음
- 위 민원에서 제기한 전자투개표 반대 이유에 대해 '편의성' 이외의 다른 타당한 논리가 있을 경우 교육공동체의 합의에 의해 반드시 선거관리규정의 투표방법에 명시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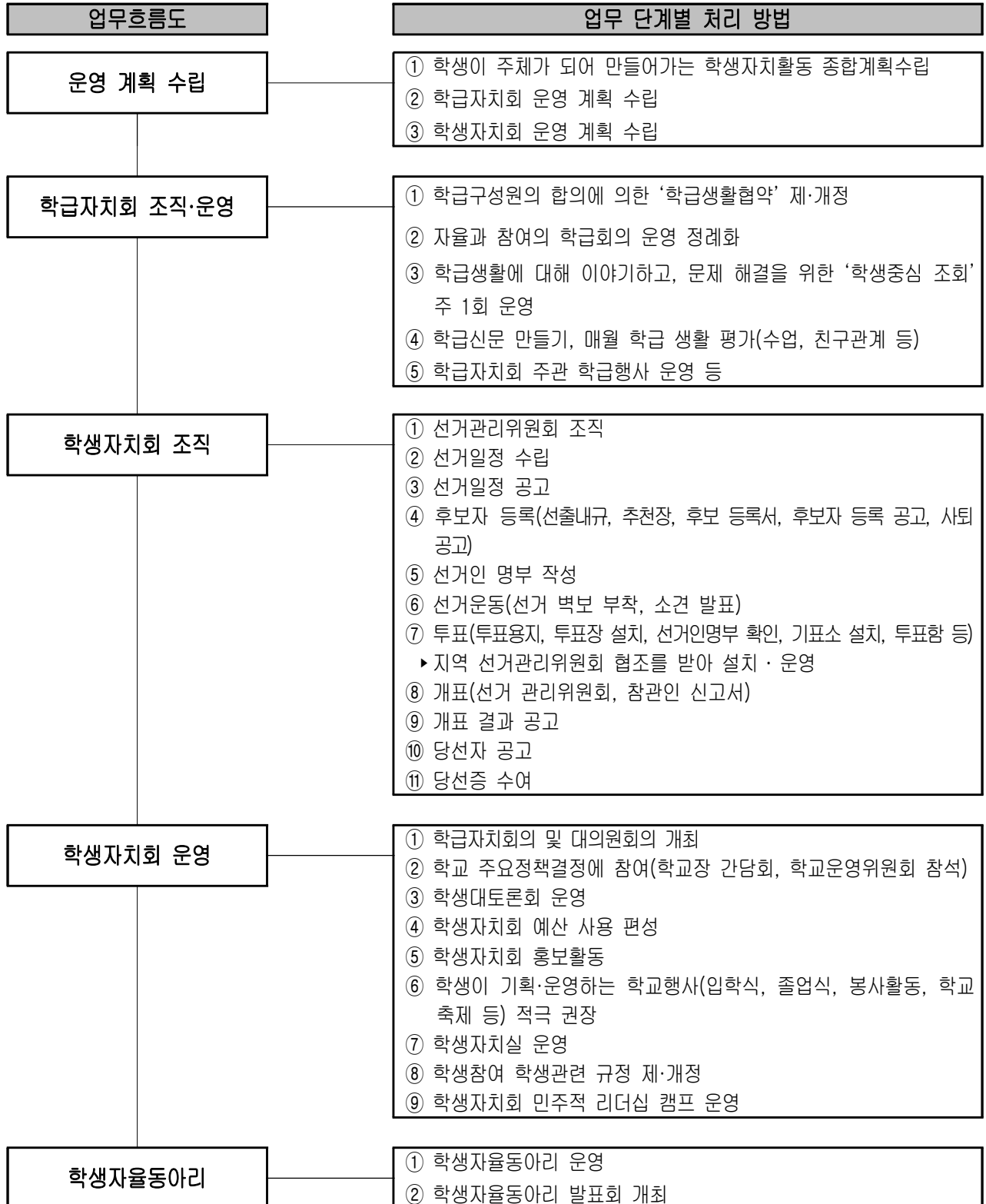
- 선거관리규정의 미비
-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이 아닌 학교 주도의 선거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 학생이 아닌 자가 포함되는 경우
- 선거절차에서의 비민주성 등(중립성, 객관성, 공정성 침해)
- 학급자치회 임원 선출 시 후보를 파악하기도 전에 단시간(학기초)에 선거가 치러지는 점
 - ※ 학급자치회 임원선거도 학생자치회 선거관리규정에 준해서 실시 권장
- 교육적 지도 명목으로 교사나 학교의 지나친 선거 개입(암묵적 특정 후보 지지)
- 후보자 공약에 대해 학교가 일방적으로 불가하다고 판정하는 경우
- 선거후보자의 입후보 제한(성적 등)
 - ※ 징계에 의한 자격제한은 시효를 두되(선도처분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 지나치게 과거의 징계로 인하여 후보출마를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모든 판단을 유권자에게 맡기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 ※ 학폭법 17조 1항 3,4,5,6,7,8호에 해당하는 경우 '2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며, 다소 가벼운 1,2호는 자격제한을 두고 않도록 권고하는 사항이 있음을 참조

2. 학생(급)자치회 운영 안내 자료



학생자치회 운영 전체 흐름도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과정을 통하여 학급자치회 및 학생자치회를 구성하고 회의 진행 방법을 익혀 자신들의 문제를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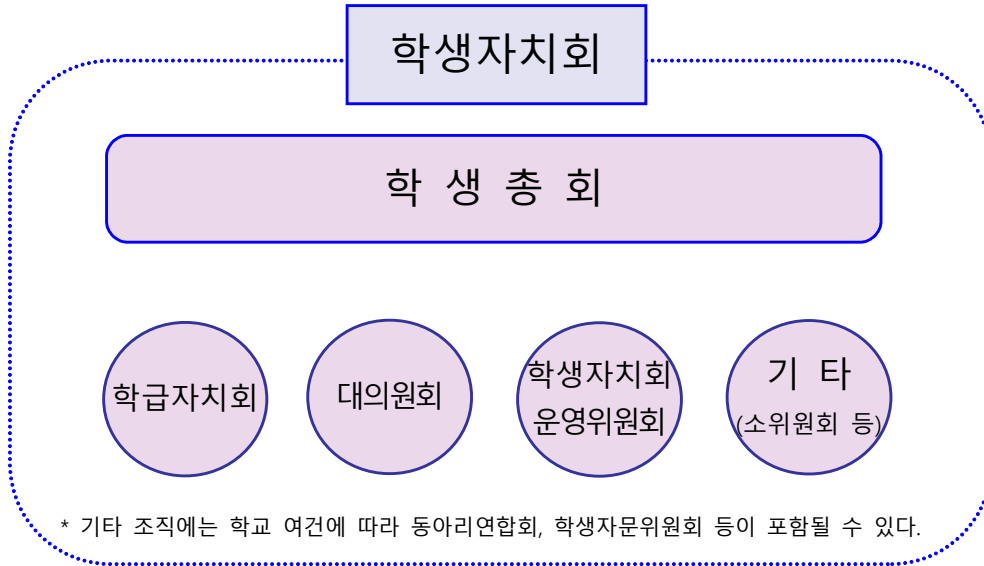




학생자치회 운영

가. 학생자치회 개념

학생자치회 회원은 재학 중인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학생자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총회, 학급회, 학생자치회, 학생자치회 운영위원회 등으로 구성되는 총체적인 조직이다.



나. 학생자치회 조직과 역할

- 회 장 : 학생자치활동 총괄, 학생자치회 운영위원회의 및 대의원회의 주관
- 부회장 : 회장과 함께 학생자치 활동 운영, 학생자치회 운영위원회의 및 학생회의 운영
- 기획부 : 학생자치활동 관련 각종 기획, 대의원회 회의록 관리 등
- 문화예술부 : 학생자치회 행사 추진(체육대회, 축제, 친구사랑의 날 등)
- 홍보부 : 학생자치회 소식지 발간과 학생자치회 사업의 대내·외 홍보활동 등
- 체육부 : 학생들의 체력향상을 위한 스포츠 클럽활동 활성화 의견 반영 등
- 봉사부 : 학교내·외 봉사활동 추진 등
- 학생인권부 : 학생인권에 관한 사항과 학생복지 향상

※ 동료학생 생활지도 부서는 운영하지 않도록 함

다. 대의원회(전교어린이회) 운영 절차

단 계	세부 진행 구조
<p>개회선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무(또는 서기)는 개회시간이 되면 참석인원을 확인하여 의장에게 보고 (※ 정족수 미달 시 회의 성립이 안 됨) ○ 의장은 총무 또는 서기로부터 정족수 보고를 받으면 "지금부터 제○차 대의원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라고 개회를 선언
<p>국민의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의장은 국민의례 절차에 따라 진행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묵념)
<p>전회 회의록 낭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장의 인사말은 짧게 하고, 대의원회의의 운영 방향을 말하면서 중립을 지키도록 함 (※ 대의원회 이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이 처리한 사안은 사후보고하고, 대의원회의에서 승인을 받도록 함)
<p>실천 결과 성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회의 이후 실천한 결과를 반성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함.
<p>각부 활동 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자치회 운영위원회 각 부서별 활동 보고 ○ 의장은 부서별 보고 이외의 기타 안건 보고 (※ 재정에 관한 보고는 총무가 하도록 하고, 재정 보고서는 회의의 승인을 받아서 보관)
<p>의안 보고, 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자치회 운영위원회, 대의원회에서 채택된 의안을 보고 ○ 의장은 대의원회의에서 정한 회의주제를 보고하거나 참석자들로부터 협의할 새로운 의안을 채택 (※ 대의원회의의 개최 전 이와 같은 의안을 참석자들에게 미리 통지해 주면 참석자들이 의안에 대해 올바른 의견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됨)
<p>질의 응답 및 토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주제에 대한 제안자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질의응답
<p>의안 의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의응답과 토론을 충분히 한 뒤 표결 ○ 동의 처리 과정은 동의(動議), 개의(改議), 재개의(再改議) 등의 성립은 일반적으로 재청이 있어야 함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auto; width: fit-content;"> <p style="text-align: center;">동의 → 개의 → 재개의 → 재청 → 의안 채택</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의가 없으면 동의로 결정하고, 개의가 있으면 다시 재개의 여부를 묻고 없으면 동의와 개의만 성립 ○ 더 이상의 재개의가 있으면 모두 다 의견으로 성립 ○ 성립된 모든 의견에 관해 질의를 하고, 각 의견의 타당성을 의견 발의자가 설명
<p>기타 토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에 상정되지 않았거나 추가적으로 제기된 안건에 대해 논의
<p>회의록 낭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기는 회의록 낭독
<p>폐회선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장은 학생자치회의 결과를 학급에 전달될 수 있도록 독려 ○ 차기회의 안내 및 폐회 선언

라. 학생의견 학교 정책 반영 과정

문제 확인	학생들의 문제 제기 및 확인
▽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학급회의 시간에 안건 건의 ② 학생자치회 소통함 건의 접수 ③ 학생자치부서에 직접 건의
▽	
협의	대의원회의, 학생대토론회 등을 통한 안건 상정, 협의, 결정
▽	
간담회 개최	학교장과의 간담회, 학교운영위원회, 교무회의 등에 회의 결과 제안
▽	
학교장 승인	발의된 내용에 대한 학교장 승인
▽	
공고	학급회의 시간, 학교게시판, 학교홈페이지 등에 확정안 공고
▽	
실천	결정되고 승인된 내용 실천
▽	
평가	실천 내용 평가

마. 학생자치회 규정(예시)

제1조[명칭] 이회는 0000학교 학교자치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학생자치회가 주체가 되어 학생자치기구를 통해 학교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학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정된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활동을 통해 참여와 실천의 민주시민 자질을 기르는데 있다.

제3조[학생자치회 조직·운영] ① 학생자치회 회원은 재학 중인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되, 유예 중인 학생은 그 기간 중 회원 자격이 정지된다.

② 학생자치회는 학급자치회, 대의원회, 학생자치회운영위원회, 학생총회 등으로 구성한다.

제4조[대의원회] ① 대의원회는 학생자치회운영위원회 각 부서 부장과 학급대표로 구성하며 회장은 의장이 된다.

② 대의원회 기능을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자치활동 사업계획 심의
2. 학생자치회 예산 및 결산 심의
3. 학급자치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의 처리
4. 기타 필요한 사항

③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1. 정기회의는 학생자치회 운영계획에 따라 월 1회 개최한다.
2. 임시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장의 발의로 개최한다.
3. 대의원회 의결은 재적 대의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4. 의결 전 전체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5. 대의원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학생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 교직원회의, 학교장과의 간담회 등을 거친 후 최종 학교장의 승인으로 결정한다.
6. 대의원회에서 결정하여 반영된 내용은 전체 학생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결정된 사항에 대한 학생은 성실히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진다.

제5조[학생자치회운영위원회]

① 학생자치회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각 부의 부장으로 구성한다.

1. 각 부는 총무부, 학습독서부, 문화행사부, 홍보부 등의 부서를 두며, 경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는 학생자치회 운영계획 수립, 학생자치회 예산편성 요구 및 집행, 결산보고,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중요한 의안에 대하여 협의한다.

제6조[학생총회] ① 학생총회는 전체 학생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 대의원회 재적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개최한다.

② 학생총회는 학생전체 대토론회 또는 학급회의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의 책무] 학교는 학생자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학생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1. 학급자치회 및 학생자치회 활동
2. 학생자율동아리 활동
3. 학교 운영 및 교육지원청의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학생 참여 활동
4. 학교장과 학생자치회 정기적 간담회
5. 학교운영위원회 학생대표 참여 보장
6. 기타 학생자치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8조[임원] 학생자치회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자치회 회장1인(3학년), 부회장 2인(3학년 1인, 2학년 1인)
2. 각 부의 부장 1인(3학년), 차장 1인(2학년)
3. 각 부의 부원 1인(1,2,3학년)

제9조[임원의 임무] 학생자치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운영한다.
- ④ 각부 부원은 부장을 도와 해당 부서의 직무를 보조한다.

제10조[임원선출 및 임기] 학생자치회 임원의 선출 방법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

- ① 학생회장, 부회장은 선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재 본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2. 회장, 부회장 모두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로 한다.
 3. 비밀 투표로 선출, 확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증을 교부한다.
 4. 학생회장, 부회장 선출은 본교 학교생활인권 규정 제5장 3절의 「학생자치회 임원 선거 관리」에 따른다.
- ② 부장, 차장, 부원에 대한 선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자치회 각부 부장, 차장, 부원은 희망자 중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공개 선발하며 대의원회의 협의로 선출한다.
 2.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전학, 질병, 취한면제, 유예, 징계, 기타 등)에는 제2항1호의 선출 방법에 따라 부장, 차장, 부원을 선출하고,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③ 학생회장, 부회장 선거는 11월중에, 학생자치회 부장, 차장, 부원은 12월 중에 대의원회의 협의로 선출한다.
- ④ 학생자치회 임원의 임기는 당해 학년도로 한다.

제11조[자격 제한] 학생자치회 임원 자격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칙위반(학교폭력 포함)으로 현재 출석정지 이상의 처벌 중에 있는 학생
2. 교칙위반으로 출석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고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학생

제12조[임원의 해촉] 운영위원회 임원으로 선출된 이후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

위원회 재적수 과반수 이상의 요구와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그 자격을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있다.

1. 교칙위반(학교폭력 포함)으로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
2. 기타 법령 위반에 따라 사법기관으로부터 처분 등을 받은 학생

제13조[학생자치회 자문위원회]

- ① 학생자치회 담당교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의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교사로 지정한다.
 - ② 학생자치회 자문위원회는 교감, 학교생활인권부장, 학생자치활동 담당교사를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에 학생들이 희망하는 교원으로 구성한다.
3. 자문위원회는 학생들의 자율 능력과 민주적인 생활 태도를 신장시키는 방향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자문한다.
1. 학생자치회 운영 사항
 2. 예산편성, 결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3. 학생자치회 임원 선거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바. 학생자치회 활동 연간 운영 계획(예시)

월	주요 활동 내용	운영 시간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2~3회 학생자치회 운영위원회 회의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건의 내용 정리 및 기획 회의 ○ 월 1회 학생회의 이후 교장선생님과의 간담회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에 전달 ○ 각종 봉사 활동 및 캠페인 활동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및 전기 절약, 국경일 의미 알리기 화장실 사용 에티켓, 교통 안전 자원 봉사 급식실 질서 도우미, 바르고 고운 말 쓰기 ○ 학생 대토론회 개최(학기별 1회) ○ 학생운영위원회 학생관련 정책 심의 시 참석 	창체시간, 점심시간 방과 후 시간, 자기주도학습시간 학급회의: 매월 1,3주 학생자치회 운영위원회회의: 매월 4째주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이 중심이 되는 졸업식 기획 및 운영 ○ 새학기 후배맞이 입학식 기획 및 운영 ○ 학생자치회 임원 리더십 캠프 	창체시간 점심, 방과후 시간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학생자치활동 운영계획 수립 ○ 신입생 환영회 개최 ○ 동아리 홍보 및 조직 ○ 1학기 학급회 . 학생자치회 운영위원회 . 학생회 조직 	창체시간 방과후 시간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친구사랑의 날 행사 	창체시간 점심시간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승의 날 . 어버이 날 행사 ○ 체육대회 프로그램 준비, 진행, 질서 지도, 뒷정리 	방과후시간
7~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자치회 임원 리더십 캠프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학기 학급회 . 학생자치회 운영위원회 . 학생회 조직 ○ 친구사랑의 날 행사 	방과후시간 창체시간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축제 기획 및 운영 ○ 학생 인권의 날 행사 	방과후시간 창체시간 이용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독립운동기념의 날 행사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진전 개최, 동영상 제작 및 상영, 프리허그 행사 실시 	점심시간, 방과 후 시간 이용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자치활동 운영 평가 및 차년도 학생 예산 편성 협의회 ○ 학생생활협약 개정 및 학생자치회 운영에 관한 교장선생님과의 간담회 	창체시간(5,6교시) 이용 자기주도학습시간 이용



학급자치회 운영

가. 학급자치회 활동 내용

연번	활동영역	활동내용
1	정기적 학급자치회의 개최	월 2회 이상 학급자치회 시간 편성(교육과정내 1회, 교육과정외 1회) 권장
2	1인 1역 활동	개인의 소질과 역량을 발휘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배움
3	학급별 테마가 있는 현장체험학습	주제에 따른 계획을 세워 실천해 보는 가치·문화·체험활동의 장
4	학급생활협약 제정·운영	학생들이 함께 논의하여 전체의 합의에 의한 학급생활협약을 만들고 스스로 실천 운영하기

나. 학급자치회 조직 및 역할(예시)

조 직	역 할
회장	학급활동 총괄, 학급자치회의 주관, 학년회의 및 학급회의 위원
부회장	회장과 함께 학급활동 운영, 학년회의 및 학급회의 위원
서기	학급 회의 결과의 기록 및 관리 등
총무부	학급 제반 사업 계획, 문서 관리 등
문화·예술부	문화·예술 관련 학급 행사 기획 및 운영 등
체육부	학급 회원의 건강 관리 및 각종 체육 활동에 관한 사항 등
봉사부	교내·외 봉사활동 주관
도서부	학급의 독서 및 토론 활동 지원 등
규칙제·개정부	학급규칙 제·개정 총괄 및 운영 등

다. 학급회의 운영

1) 회의주제 선정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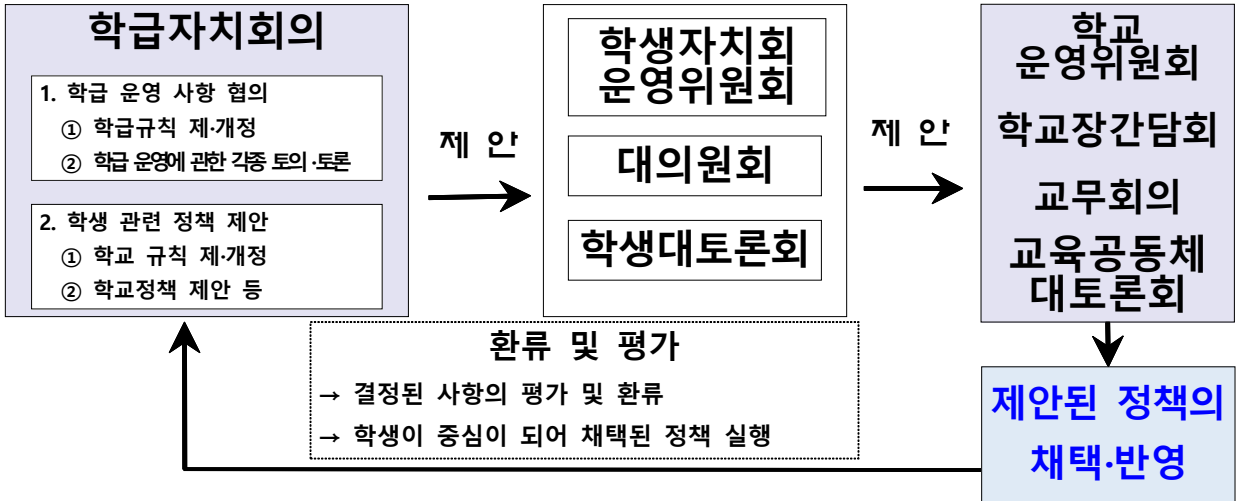
설문조사 실시	학생들이 원하는 주제를 자유롭게 서술할 수 있도록 설문지를 작성하고 학급자치회 회장은 이를 수합하여 학급자치회 의제를 선정
SNS 게시판 학급 홈페이지 활용	인터넷,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학급 홈페이지나 SNS 게시판에 제안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등록
학급 게시판 (포스트잇회의) 회의	교실 한 편에 회의용 게시판(화이트보드, 전지 등)을 마련하고, 학생들에게 포스트잇을 나누어준 후 원하는 주제를 작성하여 붙이게 함

2) 회의진행 절차

정식 절차 (표준안)	약식 절차
개회선언	개회선언
▽	▽
국민의례	의제 제안 및 선택
▽	▽
의장인사	질의 응답 및 토의
▽	▽
전회 회의록 낭독	의제 의결
▽	▽
실천 결과 반성	기타 건의 사항 제안
▽	▽
각부 활동 보고	회의 정리 및 폐회
▽	
의제 보고, 제안	
▽	
질의 응답 및 토의	
▽	
의제 의결	
▽	
기타 토의	
▽	
회의록 낭독	
▽	
폐회선언	

- 정식 절차 : 일반적으로 지켜야 하는 회의절차와 규칙으로 중요한 안건을 의결하는 경우
- 약식 절차 : 간단한 안건을 의결하는 경우

라. 학급회의 결과 반영 과정



마. 학급자치회 규정(예시)

학급자치회 규정(안)	
제1조[명칭]	이 회의는 0000학교 학급자치회라 한다
제2조[목적]	학급자치회 활동을 통해 민주시민의 자질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제3조[권리와 의무]	학급자치회는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학급자치회 회원은 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② 학급자치회 활동은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는다. ③ 학생자치활동에 관계된 학교 정책 결정에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할 권한을 갖는다.
제4조[학급자치회 구성 및 운영]	① 학급자치회는 당해 연도 학급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② 학급자치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서기 1명을 두며, 학생자치회에 준하여 총무부, 학습·독서부, 문화·행사부, 홍보부 등의 부서를 두며, 각부 부장 1인을 선출한다. ③ 각 부서의 부원은 학생의 희망과 적성, 학급회장, 부회장 의견, 담임교사의 자문을 반영하여 균형 있게 배정한다.
제5조[임원선출]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학급자치회에서 학생들이 추천하여 무기명 비밀,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회장, 부회장 후보 중 최다 득표 학생이 선출되고, 선출된 학생은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당선증을 수여한다. ③ 기타 각 부서 부장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희망자 중 학급자치회에서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2. 학급자치회에서 회장·부회장 당선자에게 위임할 시 당선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선출할 수 있다.
제6조[임원의 임무]	학급자치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학급을 대표하며 학급자치회 의장으로서 학급자치회를 주관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 시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해당 업무를 계획·운영한다.

제7조[자격 제한] 학급자치회 임원 자격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칙위반(학교폭력 포함)으로 현재 출석정지 이상의 처벌 중에 있는 학생
2. 교칙위반으로 출석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고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학생

제8조[임원의 해촉] 학급임원으로 선출된 이후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급자치회 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와 의결로 그 자격을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있다.

1. 교칙위반(학교폭력 포함)으로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
2. 기타 법령 위반에 따라 사법기관으로부터 처분 등을 받은 학생

제9조[임원의 임기] ① 학급자치회 임원의 임기는 학년(기) 단위로 한다.

- ②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전학, 질병, 취한면제, 유예, 징계, 기타 등)에는 보궐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고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두며, 운영방법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정기회의는 학급자치회 운영계획에 따라 월 1회 개최한다.
2. 임시회의는 학급자치회 재적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장의 발의로 개최한다.
3. 의결은 학급자치회 재적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가짐
4. 의결 전 전체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② 학급자치회의 협의 및 의결 사항은 담임교사의 간담회를 통하여 학급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학급회의에서 결정하여 반영된 내용은 학급 전체 학생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결정된 사항에 대해 학생은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진다.

바. 학급자치회 임원 선출 계획(예시)

1. 일 시 : 201○. ○. ○(○). ○교시
2. 대 상 : 학급 소속 학생
3. 선출 내역(기존 반장제도는 회장제도로 단일화 권장)
 - 회 장 : 남녀 구별 없이 각 반에 1명
 - 부회장 : 남 1명, 여 1명
4. 자 격
 - 선거 공고일 현재 학급에 재학 중인 학생
5. 진행순서
 - 선거일정 공고 → 후보등록 신청 → 선거운동 → 투표 → 개표 → 당선인 결정
6. 선출의 세부적인 방법
 - 가. 선거 업무를 담당하고 진행할 학급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선관위 구성은 00명으로 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 위원 중에서 민주적 방법으로 선출한다.
 - 나. 각 임원 선출 시 각 학급에서 자발적으로 출마하거나 학생들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하며, 남녀비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다. 선거기간은 1주일 정도로 충분히 두어 실시하며, 투표는 교육과정에서 정한 시간에 실시한다.
 - 라. 후보학생 소견발표, 토론회 등을 통해 후보자 검증의 기회를 가지며, 발표순서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 마. 학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사회를 본다.
 - 바. 선거는 직접, 비밀 투표로 한다.
 - 바. 개표는 선거관리위원이 하며 후보자 참관인(후보별 0명)이 참관한다.
 - 사. 모든 학급 임원은 후보자 중에서 최다득표자로 선출하고 1차 투표결과 동점자일 경우에는 동점자만을 대상으로 재투표를 한다.
 - 사. 담임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나 입후보 과정에 절대 개입하거나 관여해서는 안되며, 선거와 투표 진행에 필요한 내용을 학생들에게 교육할 수 있다. 투표 결과에 영향을 끼칠 말과 행동을 해서도 안 되며, 투표 과정에 개입하거나 관여해서도 안 된다.
 - 아. 투표결과를 별지에 작성 제출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예시)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교 학생자치회 임원선거(이하 “임원선거”라 한다)가 학생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올바르게 치러지도록 함으로써 학생에게 바른 선거의식을 심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이 규정은 학생자치회 회장선거와 부회장선거에 적용한다.

제3조 (선거관리위원회)

- ① 임원선거를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하여 학생들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선거일 공고 3주일 전까지 구성해야 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후보자로 출마하지 않는 3학년 ~ 6학년(중등의 경우 1학년 ~ 3학년) 희망자 중에서 학생자치회 대의원회(전교어린이회)의 무기명 다수대표제로 7 ~ 9인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이나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명단을 선거 공고일에 공고(붙임 제1호 서식)하여야 한다.
-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진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 ⑥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재선거, 보궐선거 등을 포함하여 선거가 모두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 ⑦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⑧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후보자 등록관리, 후보자 자격 심사, 선거운동관리, 투표와 개표관리, 당선인 결정, 당선인 공고 등 선거관리에 관한 일
 2. 투표참여 안내, 올바른 후보자 선택의 중요성 알림 등 선거 홍보에 관한 일
 3. 선거규정 위반자 감시, 위반자에 대한 경고, 후보자 등록무효 결정 등 공정선거 실현에 관한 일
 4. 기타 선거관리에 따른 중요사항 결정 등 선거에 필요한 일

제4조 (선거일 공고)

선거일은 학생자치회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승인하되, 늦어도 선거일 15일 전까지 공고(붙임 제2호 서식)하여야 한다.

제5조 (선거권자)

임원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자(이하 “선거권자”라 한다)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00학년 이상 (중등의 경우 모든) 학생으로 한다.

제6조 (투표자 명단 작성)

- ① 학급자치회는 선거일 공고일 다음날까지 투표자명단(붙임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때 학급명렬표(출석부) 사본을 투표자명단으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 ② 학급자치회는 선거일에 투표자명단 작성일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전학 등으로 인하여 투표자명단에 변동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여 전학 간 학생의 경우에는 투표자명단에서 삭제하고, 전학 온 학생의 경우에는 투표자명단에 수기로 직접 기재하여 투표자명단을 확정한다.

제7조 (후보자 자격)

- ① 임원선거의 후보자는 본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성적 등의 이유로 입후보자의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제8조 (후보자 등록)

- ① 임원선거에 후보자가 되려는 학생은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3일(매일 오후 5시까지)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1. 후보자 등록신청서(붙임 제4호 서식) 1부
 2. 추천장(붙임 제5호 서식) 1부
 3. 공약서 1부
- ② 회장, 부회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학생은 선거권자 중에서 0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③ 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 즉시 회장, 부회장선거 후보자의 기호(1. 2. 3...등으로 표시)를 추첨으로 결정하고 후보자 등록상황을 공고(붙임 제6호 서식)하여야 한다.

제9조 (등록무효와 사퇴)

- ① 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 후에 입후보 자격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와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결정한다.

- ②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붙임 제 7호 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고(붙임 제8호 서식)하여야 한다.

제10조 (선거운동)

- ① 선거운동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기간으로 한다.
- ② 선거운동은 후보자와 선거권자 중 선거운동 도우미로 신고된 사람만 할 수 있다.
- ③ 선거운동은 교내의 지정된 장소에서만 할 수 있다.
- ④ 후보자는 선거권자 중에서 10명 이내의 선거운동 도우미를 두어 선거운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후보자가 선거운동 도우미를 두는 때에는 그 명단(붙임 제10호 서식)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선거운동 도우미를 교체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⑤ 위원회는 후보자가 선거운동 도우미 신고와 교체신고를 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할 경우에는 후보자를 경고하여야 한다.

제11조 (후보자 홍보포스터)

- ① 후보자는 기호·성명·사진·공약사항 등 자기를 알리는 내용이 들어간 후보자 홍보 포스터 4매(가로 38cm, 세로 53cm 이내)를 작성하여 후보자 등록일 다음날까지 위원회에 내야한다.
- ② 위원회는 후보자가 낸 후보자 홍보포스터를 학생이 많이 볼 수 있는 게시판이나 복도 등에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붙여야 한다.

제12조 (소견발표회)

- ① 후보자는 합동 소견발표회와 개인 소견발표회를 통하여 자신의 소견과 공약사항 등을 선거권자에게 알릴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선거기간 중에 선거권을 가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1회의 합동 소견발표회를 열어야 한다.
- ③ 합동 소견발표회의 발표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 이내로 위원회에서 정하고, 발표순서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 ④ 후보자는 선거운동 도우미와 함께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교실이나 학생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개인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이때 학교수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 ⑤ 각 후보자별로 선거운동 도우미 중에서 찬조 연설자를 지정하여 개인 소견발표회에서 지원연설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 (어깨띠·피켓 등)

- ① 후보자와 선거운동 도우미는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공약사항·기타 후보자를 알리는데 필요한 사항을 쓴 어깨띠·피켓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② 선거운동용품 제작은 창의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제작하되, 제작비용이 사회통념상 학생 수준과 비교하여 과다하다고 위원회가 결정한 선거운동용품은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분 등)

- ① 위원회는 후보자, 선거운동 도우미, 후보자의 가족이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확인한 때에는 경고 또는 후보자 등록무효의 처분을 한다.
 1. 경고사유의 행위
 - 가. 후보자간 다툼
 - 나. 선거운동장소 이외의 장소에서의 선거운동
 - 다. 다른 후보자를 헐뜯거나 거짓말을 퍼뜨리는 경우
 - 라. 선거규정을 경미하게 위반한 행위
 2. 후보자 등록무효사유의 행위
 - 가. 선거권자에게 음식물, 선물 등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을 하는 경우
 - 나. 선거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 행위
 - 다. 2회 이상의 경고를 받았을 경우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를 하거나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하는 때에는 사전에 관련자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의 경고 시 후보자와 관련된 선거운동 도우미나 가족에게 알리고 게시판 등을 통해 전체 학생에게도 알려야 한다.

제 15조 (선거비용)

학교선거규정에 따른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선거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학생자치회비로 지출할 수 있다.

제16조 (투표)

- ① 투표는 선거권자가 1인 1표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투표방법은 투표용지(붙임 제10호 서식)에 기표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② 투표용지는 선거별로 위원회가 선거일 전일까지 만든다.
- ③ 위원회는 투표시각 전까지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④ 투표는 위원이 관리한다. 다만 위원만으로 투표를 다 관리할 수 없을 때에는 투표소에서 투표사무를 도와줄 투표 도우미를 학생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모든 학생이 잘 알 수 있도록 투표소 위치, 투표절차 등을 자세히 알려야 한다.
- ⑥ 후보자는 학년별로 투표참관인 1명을 신고할 수 있으며, 그 명단(붙임 제11호 서식)을 선거일 전일까지 위원회에 내야한다.
- ⑦ 투표참관인은 투표진행과정의 잘못에 대하여 위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은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바로 시정해야 한다.
- ⑧ 투표는 선거권자가 투표자명단의 자기 이름에 서명한 후 선거별로 각각 투표용지 1장을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는 방법으로 한다.
- ⑨ 위원장은 투표가 끝나면 투표상황을 기록하고 투표함과 남은 투표용지를 투표참관인과 같이 개표장소로 옮겨야한다.

제17조 (개표)

- ① 위원회는 투표가 끝나기 전까지 개표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개표사무는 위원이 담당한다. 다만 위원만으로 개표관리를 다 할 수 없을 때에는 개표사무를 도와줄 개표 도우미를 학생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 ③ 후보자는 개표참관인 2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그 명단(붙임 제11호 서식)을 선거일 전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④ 개표참관인은 개표진행과정의 잘못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바로 시정하여야 한다.
- ⑤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 1. 위원회가 작성하지 아니한 투표용지를 사용한 것
 - 2. 어느 난에도 “○” 표를 하지 아니한 것
 - 3. 2 이상의 후보자의 난에 “○”표를 한 것
 - 4.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 5. “○”표 대신에 다른 기호나 표시(이름 포함)를 한 것
- ⑥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유효로 한다.
 - 1. 같은 후보자의 난에 2개 이상의 “○”표를 한 것
 - 2. 후보자의 구분선상에 “○”표를 한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 3. “○”표 한 것이 옮겨 묻은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 명확한 것
- ⑦ 위원장은 개표가 끝나면 즉시 개표결과(붙임 제12호 서식)를 발표하고 선거록(붙임 제13호 서식)을 작성한다.

제18조 (당선인 결정)

- ① 위원회는 개표결과 회장선거의 후보자중 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자를 회장 당선인으로, 부회장선거에 나온 후보자 중에서 다득표 순으로 후보자 2인을 각각 부회장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② 후보자 등록 마감 후 회장 후보자가 1인이거나 부회장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당해 임원선거에 등록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③ 개표결과 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다시 투표를 실시하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 때 재투표 일시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학교장이 승인하고, 재투표 후에도 가장 표를 많이 받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이 경우에는 학생자치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당선인을 결정한다.
- ⑤ 개표종료 직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결과에 대하여 그 내용을 공고(붙임 제 14호 서식)하여야 한다.
- ⑥ 위원회는 당선인에게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당선증을 발급한다.

제19조 (재선거)

- ①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거를 다시 실시한다.
 1. 후보자 수가 선출할 임원의 수보다 적은 때
 2.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그만 두었을 때
 3. 당선인이 선거규정을 위반하여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이 선거일 후에 발견된 때
- ② 재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정하고, 재선거 절차는 처음에 실시했던 선거의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20조 (보궐선거)

- ① 회장과 선임학년 부회장이 모두 전학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회장후보가 없을 경우 선임학년 부회장이 회장이 되고 보궐선거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 ② 보궐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정하고, 선거절차는 처음에 실시했던 선거의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21조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

- ① 선거 과정과 당선인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당선인 결정 후 7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붙임 제15호 서식)을 할 수 있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조사를 실시한 후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사전에 이의신청자와 관계자를 불러 신청취지와 해명을 들은 후 결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와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선거과정에서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학생은 결정을 통보 받은 때부터 3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게 이의신청(붙임 제16호 서식)을 할 수 있다.
-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후 3일 이내에 회의 등을 통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후보자와 위원회에 통보하고 그 사항을 공고한다.

제22조 (당선무효)

당선인이 이번 선거와 관련하여 제16조 제1항의 등록 무효사유의 행위를 한 것이 선거일 후에 확인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제23조 (보칙)

- ① 위원회는 선거록과 투표지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규정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③ 이 규정은 학교 규정개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침에 의해 개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서식 목록

1. 위원공고
2. 선거일공고
3. 투표자명단
4. 후보자등록신청서
5. 추천장
6. 후보자등록공고
7. 후보자사퇴신고서
8. 후보자(등록무효)(사퇴) 공고
9. 선거운동도우미 신고서
10. 투표용지(예시)
11. 투표 및 개표참관인 신고서
12. 개표결과
13. 선거록
14. 당선자공고
15. 당선증
16. 이의신청서

[붙임 제1호 서식]

위 원 공 고

년 월 일 실시하는 학생자치회 임원선거를 관리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 학교선거관리위원회(직인)

위 원 명 단

구 분	학 년 · 반	성 명	비 고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붙임 제2호 서식]

선 거 일 공 고

년도 학생자치회 임원선거의 일정과 입후보자격요건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 학교선거관리위원회(직인)

1. 선거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후 보 자 등 록			
선 거 운 동 기 간			
합동소견발표회			
투 표 일			
개 표 일			

2. 후보자등록시 제출서류

- 가. 후보자등록신청서 1부.
- 나. 추천장 또는 추천서 1부.
- 다. 공약서 1부.

3. 입후보자격

- 가. 년 월 일 현재 본교 재학생으로 회장은 ○학년에, 부회장은 ○학년 또는 ○학년에 재학중인 자
- 나. 선거권자 20명이상 30명이내의 추천을 받은 학생
- 다. 성적 등의 이유로 후보자의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붙임 제3호 서식]

투 표 자 명 단

학년 반

번 호	성 명	서 명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번호	성명	서명	비고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작성년월일 : 년 월 일

작성 자 : ○학년 ○반 학급자치회장 (서명)

※ 투표자명단을 작성하지 않고 학급 명렬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붙임 제5호 서식]

추천장

▣ 추천후보자

○ 성 명 :

○ 학년·반 : 제 학년 반

위의 사람을 년 월 일 실시하는 학생자치회 (회장)(부회장)선거
의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붙임: 후보자를 추천하는 학생 명단 1부.

○○학교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후보자를 추천하는 학생 명단

일련번호	학년 · 반	성 명	서 명
1	학년 반		
2	학년 반		
3	학년 반		
4	학년 반		
5	학년 반		
6	학년 반		
7	학년 반		
8	학년 반		
9	학년 반		
10	학년 반		
11	학년 반		
12	학년 반		
13	학년 반		
14	학년 반		
15	학년 반		
16	학년 반		
17	학년 반		
18	학년 반		
19	학년 반		
20	학년 반		
21	학년 반		
22	학년 반		
23	학년 반		
24	학년 반		
25	학년 반		
26	학년 반		
27	학년 반		
28	학년 반		
29	학년 반		
30	학년 반		

[붙임 제6호 서식]

후 보 자 등 록 공 고

년 월 일 실시하는 학생자치회 임원선거의 후보자로 아래와 같
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년 월 일

○○학교 선거관리위원회(직인)

임원선거 후보자 명단

회 장 후 보 자				부 회 장 후 보 자							
				○ 학년				○ 학년			
기호	학년·반	성별	성명	기호	학년·반	성별	성명	기호	학년·반	성별	성명
1	학년 반			1	학년 반			1	학년 반		
2	학년 반			2	학년 반			2	학년 반		
3	학년 반			3	학년 반			3	학년 반		
4	학년 반			4	학년 반			4	학년 반		
5	학년 반			5	학년 반			5	학년 반		

[붙임 제7호 서식]

후 보 자 사 퇴 신 고 서

1. 학년 · 반 : 학년 반
2. 성 명 : (한자 :)
3. 사퇴이유 :

본인은 년 월 일 실시하는 학생자치회 (회장)(부회장)선거의

후보자를 사퇴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후보자 (서명)

○○학교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붙임 제8호 서식]

후보자 (등록무효) (사퇴) 공고

년 월 일 실시하는 학생자치회 (회장)(부회장)선거의 후보자가
아래와 같이 (등록무효) (사퇴)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년 월 일

○○학교 선거관리위원회(직인)

(등록무효) (사퇴) 후보자 명단

구 분	기 호	후보자 성명	(등록무효) · (사퇴) 연월일	(등록무효) · (사퇴) 이유

※ 작성요령 : 구분란에는 “등록무효” “사퇴”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붙임 제9호 서식]

선거운동도우미 신고서

년 월 일 실시하는 학생자치회 (회장)(부회장)선거의 선거운동도우미를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선거운동도우미 명단

번호	학년·반	성명	선임·교체	비고
1	학년 반			
2	학년 반			
3	학년 반			
4	학년 반			
5	학년 반			
6	학년 반			
7	학년 반			
8	학년 반			
9	학년 반			

※ 교체시에는 ○○○와 교체라고 기재합니다.

년 월 일

후보자 성명 : (서명)

○○학교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투 표 용 지 예 시

학생자치회 (회장)(부회장)선거투표		
기 호	성 명	기 표 란
1		
2		
3		
4		
5		

○○학교 선거관리위원회

※ 회장과 부회장선거를 각각 실시하는 경우 투표용지는 색상을 달리하여 각각 작성할 수 있습니다.

[붙임 제11호 서식]

투표와 개표참관인 신고서

년 월 일 실시하는 학생자치회 (회장)(부회장)선거의 투표와 개표참관인을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1. 투표참관인 명단

학년 · 반	성 명	비 고
학년 반		
학년 반		
학년 반		

2. 개표참관인 명단

학 년 · 반	성 명	비 고
학년 반		
학년 반		

년 월 일

후보자성명 : (서명)

○○학교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붙임 제12호 서식]

학생자치회 (회장) (부회장)선거

개 표 결 과

선거인수 (가=나+마)	투표자수 (나=다+라)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라)	기권수 (마)	투표율 (%) (나/가)
		1	2	3	4	5	계 (다)			

검 열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부위원장	위 원 장

※ 회장과 부회장선거를 각각 실시하는 경우 집계표를 따로 준비하여 집계합니다.

○○학교 선거관리위원회(직인)

[붙임 제13호 서식]

학생자치회 임원선거 선 거 록

1. 투·개표

가. 투표장소 :

나. 개표장소 :

2. 투·개표 일시

가. 투표일시 :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나. 개표일시 :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3. 투표상황 및 후보자별 득표상황

구 분	회 장 선 거		부 회 장 선 거						
			○ 학년			○ 학년			
선거인수	인		인			인			
투표자수	인		인			인			
기권자수	인		인			인			
후보자별 득표상황	기호	후보자 성 명	득표수	기호	후보자 성 명	득표수	기호	후보자 성 명	득표수
	1		표	1		표	1		표
	2		표	2		표	2		표
	3		표	3		표	3		표
	4		표	4		표	4		표
	5		표	5		표	5		표
무 효 투표수	표		표			표			

4. 당선자 명단

회 장			부 회 장		
기 호	후보자성명	학년·반	기 호	후보자성명	학년·반

이 선거록은 사실대로 기록하였습니다.

년 월 일

위 원 장 (서명)

부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붙임 제14호 서식]

당 선 자 공 고

년 월 일 실시한 학생자치회 (회장)(부회장)선거의 당선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학교 선거관리위원회(직인)

당 선 자 명 단

회 장		부 회 장	
학년 · 반	성 명	학년 · 반	성 명
		○학년 ○반	
		○학년 ○반	

[붙임 제15호 서식]

등록번호

당 선 증

00 학교

제 학년 반

이름

위 후보는 년 월 일 실시한 학생
자치회 임원선거에서 있어서 회장(부회
장) 당선인으로 결정되었으므로 당선증을 드
립니다.

년 월 일

○○ 학교 선거관리위원회(직인)

이 의 신 청 서

	학년 · 반	이 름
신 청 자		
이의신청건		
세부 설명		

위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성명 _____(서명)

○○ 학교선거관리위원회 귀중